

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4.
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 수당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잡과 불편을 해소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(수당)의 규정중
"월 100,000원 이하의"를 삭제하고 "예산의 범위안에서"로
"응할시는"을 "응할시에도"로 개정함

3. 근거법령

해당없음.

- 첨부 : 1.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월 100,000원 이하의”를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로 하고
“응할시는”을 “응할시에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